

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경훈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7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김경훈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곽향기, 김규남, 김영철,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상혁, 박영한, 박춘선,
송경택, 이상욱, 이영실,
이은림, 이종배, 장태용,
정준호, 정지웅, 최진혁,
허 훈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의 시행(2024. 5. 19.)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조항을 정비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한편, 야생조류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조례로 지정하기 위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규정함(안 제20조 제2항)
- 나. 야생조류에 관한 세부 규정을 삭제함(안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삭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의2를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1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」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</p> <p>2.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류 이동경로 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</p> <p>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·자문 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·자문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·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20조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의2를 따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

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상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맞게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간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